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확대〉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2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01. 29.
3. 회 부 일 : 2026. 0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17제1항,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u>산후조리원</u> 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u>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 ----- ----- <u>의료기관 현황, 산후조리원의</u> ----- ----- ----- <u>이하</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 내
<u><신 설></u>	11.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 분의 1 이내
<u><신 설></u>	② 국가는 「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을 고려하여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지원 지역을 정할 수 있다.
<u>② (생 략)</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990년대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가 규정되었음.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²⁾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규정되었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었음.

□ 2025년 6월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60개소 중 4.6%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60	21	439	67.1	63.4	176	375	8.8	13

자료: 보건복지부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고

□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설치비가 약 44억원, 평균 운영비가 약 11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경비 보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신부의 이용 요금⁴⁾ 부담이 낮아지는 등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부대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운영비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8,794	2,925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10,195	2,639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9,417	1,967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5,120	1,435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13,700	2,141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882	804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4,640	1,128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1,167	853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900	958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6,143	712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980	1,000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964	483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1,718	736

4) 참고로 임신부가 2주 동안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366만원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176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은 375만원임.

완도군 공공산후조리원	1,708	361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1,263	456
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500	451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600	756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7,500	1,400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9,195	1,27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3,122	906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1,831	625
평균	4,397	1,1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⁵⁾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 민간산후조리원에 미치는 영향,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무가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국비 지원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원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국비 지원시기 설치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역차별 및 지방재정을 통해 이용료 감면 등으로 경영

5)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지 적자인 시설에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발생 우려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500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2014-02-27	27	30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2023-12-01	12	12	1,187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07-26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19-05-03	13	13	742
경기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05-02	20	20	2,436
강원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2016-02-16	13	15	765
강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2-24	10	11	1,318
강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02-01	5	6	603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7-13	8	8	825
강원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05-24	7	8	1,736
충남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02-07	8	9	580
전남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2015-09-01	10	12	493
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8-05-18	10	10	616
전남	완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9-06-11	10	10	730
전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0-12-07	16	18	797
전남	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03-15	10	10	196
경북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9-15	8	10	710
경북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31	12	14	1,432
경북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28	13	13	1,997
경남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04-29	8	8	524
제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2013-03-29	11	15	548